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 : 2012년 07월 26일

신한BNPP프레스티지적립식안정형증권투자자산신탁제1호[채권혼합]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모투자신탁 투자비용 기재 보완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비용 기재 보완 : 제 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-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1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적립식 안정형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혼합] : 100% 이하 2. 신한 BNPP 국공채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: 90% 이하 3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: 50% 미만 <신설>	-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1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적립식 안정형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혼합] : 100% 이하 2. 신한 BNPP 국공채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: 90% 이하 3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: 50% 미만 단, 상기 모투자신탁 전체 투자의 합은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50% 이상으로 한다.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모투자신탁 투자비용 기재 보완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모투자신탁의 추가 : 제 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- 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1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적립식 안정형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혼합] : 100% 이하 2. 신한 BNPP 국공채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: 90% 이하 3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: 50% 미만 <신설>	- 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1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적립식 안정형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혼합] : 100% 이하 2. 신한 BNPP 국공채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: 90% 이하 3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: 50% 미만 단, 상기 모투자신탁 전체 투자의 합은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50% 이상으로 한다.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모투자신탁 투자비용 기재 정정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비용의 정정 : 제18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제18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 1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적립식 안정형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혼합]의 수익증권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 이하로 한다. 2. 신한 BNPP 국공채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의 수익증권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하로 한다. 3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의 수익증권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미만으로 한다.	제18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 1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적립식 안정형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혼합]의 수익증권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 이하로 한다. 2. 신한 BNPP 국공채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의 수익증권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하로 한다. 3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의 수익증권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미만으로 한다.